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
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황 희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의 결격사유로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대체 결격사유를 두도록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7908호, 2021. 1. 26. 공포, 2021. 7. 27. 시행)됨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될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,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 기간마다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의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한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 등) 법 제15조제2호의2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정신 장애로 인하여 문화재수리 또는 감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28조 제1항부터 및 제3항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”을 “문화재수리기술자”로 한다.

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고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(문화재감리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별표 11의2와 같다.

③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신규교육: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

받은 날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3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것

2. 정기교육: 제1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매 5년이 되기 전까지 6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것

별표 7의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사무실

가. 문화재실측설계업과 문화재감리업을 함께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요건 중 어느 하나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

별표 1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문화재수리업자 및 문화재감리업자의 직무 수행 능력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문화재수리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0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28조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전문교육의 내용 및 방법(제28조제2항 관련)

1. 전문교육의 내용

- 가.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
- 나. 해당 업무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

2. 전문교육의 방법

- 가. 집합교육: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교육일시·교육장소에 출석하여 개설된 강의 과정을 이수
- 나. 원격교육: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강의 과정이 마련되어 있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과정을 이수
- 다. 자율교육: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 - 1) 국내외 석사·박사 학위 취득
 - 2) 논문 게재, 저술, 기고
 - 3) 국내외 학회, 단체 등이 실시하는 학술발표대회·교육·연수·토론회 등에서의 주제발표·토론·강연 등

비고

- 1. 제2호 나목과 다목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합산한 시간은 제2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교육시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2. 제2호다목에 따른 자율교육의 종류별 인정 대상, 시간 및 방법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2조의2(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 등) 법 제15조제2호의2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정신 장애로 인하여 문화재수리 또는 감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</u>
제28조(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) ① 문화재수리업자·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감리원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.	제28조(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고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(문화재감리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.
②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별표 11의2와 같다.
1.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감리원이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	<u><삭 제></u>

에 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

2. 해당 업무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

③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.

1. 문화재수리기술자

가.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된 날부터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전문교육을 받을 것

나.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가목의 교육 또는 직전의 전문교육을 받은 날 이후에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 6개월이 되기 전까지 전문교육을 받을 것

2. 문화재감리원

가.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된

<삭 제>

③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신규교육: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3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것

2. 정기교육: 제1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매 5년이 되기 전

<u>날부터 문화재감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전문교육을 받 을 것</u>	<u>까지 6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것</u>
<u>나. 문화재감리원이 가목의 교육 또는 직전의 전문교 육을 받은 날 이후에 문화 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문 화재감리 업무를 실제 수 행한 기간이 5년 6개월이 되기 전까지 전문교육을 받을 것</u>	
<u>④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시 간은 각각 32시간 이상으로 한 다.</u>	<u><삭 제></u>
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수료한 <u>문화재수리 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</u>에게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발급하 고,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에 전문교육의 수료사항을 기록· 확인하여야 한다.	⑤ ----- ----- <u>문화재수리</u> <u>기술자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⑥ (생략)	⑥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문화재청 수리기술과	
연 락 처	042-481-4864